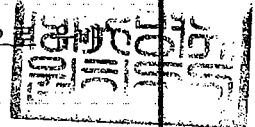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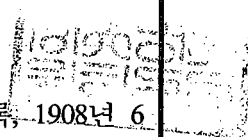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조 중 응	일본명	
	한 자	趙 重 應	이 명	舊名 重協 / 호 琅田
출 생 연월일	1860년 9월 22일		사 망 연월일	1919년 7월 25일
본 직	京城府 南部 冷井洞 7통 12호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60. 9.22	한성부 남부 회현방에서 출생 (양주조씨 장육당공파 족보; 조선귀족열전, 74쪽)		
	1878.	성균관 中學東齋 齋任 관학儒生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883.10.15~1885. 5	만주, 외몽고, 시베리아, 바이칼 호 일대 유람 (같은 자료)		
	1885. 6.13~1890. 5	北方南開論을 주창하여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 (같은 자료)		
	1890. 6.	殿講直赴 初試 (같은 자료)		
	1894. 7.	의정부 詮考課 주사 (같은 자료)		
	1894. 9.15~1894.12	보빙대사 義和君 수행원으로 일본 다녀옴 (같은 자료)		
	1894.12.	외무아문 참의 (고종실록, 1894년 12월 4일;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895.	외부 교섭국장 겸임 각 항구 각국 거류지 조사정리위원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895. 8.25~1896. 2.24	법부 형사국장, 법률조사개정 위원, 특별법원 판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896. 2.24	김홍집 실각으로 법무 형사국장 면직 후 일본으로 망명 (고종실록, 1896년 2월 24일)
1904년 ~ 1945년	
1906. 3.22	특별사면 (일본외교문서, 39권 2책 944호)
1906. 7.30	일본에서 귀국 (주한일본공사관기록 甲種外務稅關在外鮮人雜, 1906년 7월 31일;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6.10	통감부 촉탁 農事 調査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6.10.14	대한농회 부회장에 선정 (대한민보, 1906년 10월 17일)
1907. 2~1909.10	대동학회 발기, 지방총무, 강사, 병설 대동법률전문학교 교장 역임 (일제협력단체사전, 25~27쪽)
1907.5.25~1908.6.6	법부 대신 (고종실록, 1907년 5월 25일; 순종실록, 1908년 6월 6일)
1907. 5.29	형법개정 총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7. 6	한국과 일본 양국 고위인사들로 조직된 한일동지회(한일친목회)에 참여 (황성신문, 1907년 7월 2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4일)
1907. 7.21	고종황제 강제퇴위에 주도적으로 참여 (일본외교문서, 제40권 제1책 513호, 514호, 515호 1907년 7월 22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1907. 8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2등 태극장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7.10. 4	임시감독 宮中特別警衛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7.10.10	신사회 발기인 위원, 평의원 역임 (일제협력단체사전, 41~42쪽)
1907.10.11	대일본(제국) 황태자전하 봉영 한성부민회 고문 으로 선정됨 (황성신문, 1907년 10월 11일)
1907.10.2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太極章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7.10.26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旭日章을 받음 (같은 자료)
1907.11~1908. 8	동아개진교육회 회장에 선임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 1908년 3월 13 일, 4월 8일, 6월 9일)
1907.12.4~1908.5.2	임시서리 농상공부 대신사무 (같은 자료)
1908. 3.1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卽位禮式紀念 金章祗를 받음 (같은 자료)
1908. 4.10	임시감독 宮中警衛사무 (같은 자료)
1908. 5.26	대한여자홍학회 고문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29일, 7월 15일)
1908. 6. 6	농상공부 대신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8. 9.13	동양협회 경성지부 임회 (일제협력단체사전, 29쪽)
1909. 7. 8	승중회 찬성원 (황성신문, 1909년 6월 12일, 7월 8일; 대한매일 신보, 1909년 7월 8일)
1909.11. 9	한국황실정부 伊藤博文 조례단의 내각대표로 방일 (대한민보, 1909년 10월 29일, 31일, 11월 10일, 14일, 28일, 12월 1일, 14일)
1909.11.2~1909.11.4	이등박문 관민추도회 발기 및 개최 (일제협력단체사전, 67~68쪽)



1910. 4.21~1910. 5	일본관광단의 정부 대표로 방일 (황성신문, 1910년 4월 15일, 16일, 19일, 20일, 22일, 23일, 30일)
1910. 6.22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결 모의 (朝鮮併合史, 540~541쪽)
1910. 8.27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大勳李花大綬章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10. 9	前통감 曾禰荒助 장례에 前내각대표로 참석 (매일신보, 1910년 9월 27일, 30일)
1910.10.1~1919.7.25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11일)
1910.10. 7	한일합병 공로로 子爵 작위를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8일, 9일, 1911년 2월 19일, 23일; 조선귀족이력서, 15쪽)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10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4월 9일 부록)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정4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조선귀족이력서, 15쪽)
1915. 1	삼십본산연합사무소 고문 (조선불교총보, 제7호)
1915. 5	서화연구회 부회장 (매일신보, 1917년 1월 20일, 5월 27일)
1915.11.10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大正] 대례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6년 12월 13일 부록)
1916. 1.20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임명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22일)
1916.12	대정실업친목회(대정친목회) 회장 (매일신보, 1916년 11월 25일, 1917년 2월 27일)

	1917. 2	불교옹호회 고문 (조선불교총보, 제2호, 제7호)
	1919. 7.25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9월 1일; 조선귀족이력서,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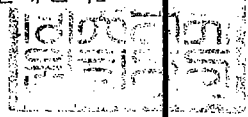
조 서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1) 고종 황제 강제 양위에 참여

▶ 『관보』, 1907년 7월 19일 호외; 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 권8, 소망출판, 2004, 149쪽.

“조서에 이르시기를,
오호라 짐이 열조의 대업을 받들어 이를 계승하고 지키기를 지금까지 44년이 되었다. 여러 번 많은 난리를 겪으며 다스림이 뜻과 같지 않아 사람을 쓰는 것이 더러는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소요와 거짓이 날로 심해지고 시행한 조치가 그때의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아 어려움과 근심이 한창 급해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곤궁함과 나라의 위기가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별별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깊은 물을 건너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다행히 元良[황태자 - 작성자]을 믿고 의뢰함이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은 하늘이 이루어 준 것이요 드높은 명망은 일찍 드러났다. 취침 때 문안하고 식사 때에 들보아주는 겨를에 보탬이 크고 많았으니 정무를 시행하고 개선할 방책을 맡길 사람이 있게 되었다. 짐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늙어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역대로 이미 스스로 행해져 오는 전례가 있고, 또한 우리 역대 왕조의 훌륭한 예법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일이다. 짐이 이제 군국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명하노니 의식절차는 궁내부 장례원에서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光武十一年 七月 十八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陸軍副將 勳三等	李秉武
法部大臣	趙重應
學部大臣 勳三等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宋秉峻

▶ 『관보』, 1907년 7월 22일 호외; 『대한계년사』 권8, 154~155쪽.

“조서에 이르시기를,

아, 너희 대소신민은 짐의 말을 똑똑이 들으라. 짐이 大朝[고종황제 - 작성자]의 분명한 명을 받들어 庶政을 대리하노라. 낡은 제도를 새롭게 하는 이때에 즈음하여 國是를 정하지 아니하고 時勢를 오해한다면 처음의 작은 차이로 忠逆을 가를 뿐 아니라 종사와 국가에 해를 끼침이 또한 예사롭지 않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근래에 이르러 혹자는 몹시 분하게 여긴다고 이르고, 혹자는 충의를 방자하여 소란과 거짓이 도처에서 요란하게 들리거늘 누차 勅諭를 내리셔서 진실된 마음을 펼쳐 보이셨으나 둔하게도 그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잘못을 고집하니 매우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 아아 너희 백성들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지내던 구습을 고집하지 말고 하늘의 때를 살피고, 세상의 일을 상고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리를 알맞게 하여 나라를 중흥시키고 변성하게 하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할지니 너희 백성은 짐이 아니면 누구를 섬기며, 짐은 너희가 아니면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너희 백성은 국시를 정하고 도리를 판별하여 다시 망동을 부리지 말지니 각각 그 생업을 편안케 하라. 이제부터 조정에서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사를 실행하고 민간에서는 산업을 번성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교육의 일을 연구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문명의 시대로 함께 올라 영원히 태평스러운 복을 누릴지니 아아 너희 백성들은 능히 짐의 뜻을 익히어 대업을 서로 협력하여 도울지어다. 아, 너희 백성들이여.

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既承尊奉

大朝處分矣

대황제의 높이 받드는 의식 절차를 궁내부 장례원이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陸軍副將 勳三等 李秉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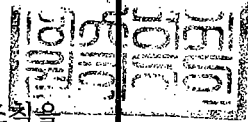
法部大臣 趙重應

學部大臣 勳三等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宋秉峻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론설 - 황태조 대리 호신 스실」.

“서력 일천 구백 칠년 대한 광무 십일년 칠월 십팔일에 황제폐하께서 조칙을 내리어서 황태자 전하로 하여금 군국대사를 대리하라 하오시니 황제폐하께서 춘추가 높으시고 황태자께서도 춘추가 정성하신즉 이런 일이 옛적부터 여러 대왕의 집에서 임의 행한 전례가 많고 또한 대한 열성조에서도 여러 번 행하신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중략) 국가의 무강한 복을 경축하여 대한 천지의 화기가 윤희 하겠거늘 어찌하여 수일 사이에 공론이 비등하고 민심이 분격하여 (중략) 마침내 대궐문 앞에서 군도를 두르기도 하며 종로 위에서 포성이 부절하여 주검이 다수하고 유혈이 낭자하여 전쟁을 지냄과 다름이 없는 모양이니 이것은 웬일이고 (중략) 대한 황제의 위를 폐하고 세운다는 말이 일본사람 신문에 낭자 하더니 며칠이 못되어 한국 내각 대신이 비밀히 공의 하다가 여러 날 궐내에 들어가서 황제 성의에 축로되는 것을 불고하고 강박히 아뢰오되 폐하께서 종시 거절하신다더니 필경은 칠월 십칠일 밤에 여러 대신이 일제히 궐내에 들어가고 이등통감도 소명을 인하여 폐현한지라 그날 밤 네 시에 일본 병정과 일본경부 한 사람



은 대청까지 올라간 일이 있다 하며 이윽고 조칙을 내리시매 여러 대신이 또 어떻게 아뢰었는지 원로 몇 사람이 소명을 받아 궐내에 들어간즉 여러 대신은 협실로 피하고 병정과 순사도 보지 못하겠고 대궐 안이 조용하더라. (중략) 이튿날 조칙이 반포되매 온 장안 백성들이 물 끓듯 하여 필경 피를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략) 이번 일이 만일 황제의 성의로 된 일이면 전국 백성이 다 춤을 추고 경축 할 터인데 이제 이같이 백성의 뜻이 분격하고 효상이 참담한 것은 이번 일이 외국 사람의 억제와 내각 대신의 강박히 청함으로 된 일시오 (중략) 어찌 놀랍지 아니리오 한국 대신으로 말 하겠다면 오늘날 이 거조가 외국 사람의 시키는 것을 좃아 황상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은 누구뇨 총리대신 리완용, 내부대신 림선준, 법무대신 조중응,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 학부대신 이재곤,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이라.”

▶ 『대한계년사』 8권, 146~159쪽, 「태자에게 명하여 나라의 일을 대리하게 하다」.

“이 때 이완용 등이 날마다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에게 가서 보고 은밀히 논의하였다. 7월 18일 오후 2시 총리대신 이완용이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 법무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등과 함께 다시 내각회의를 열었다. 4시에 일제히 대궐에 들어갔다. 황제는 여러 번 伊藤博文을 불렀다. (중략) 이완용 등은 7시 반부터 20시까지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일에 대해 아뢰었다. 수옥헌 안에는 이완용 등 7명만이 있었고, 문 밖에는 일본 순사무리가 빈틈없이 지키며 막았다.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는 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막아서 통해 다닐 수 없었다. 황제가 허락하지 않자 이완용, 이병무, 송병준은 모두 다그치며 요청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어서 오전 3시에야 비로소 황태자에게 대리를 명령하는 조서를 내렸다. (중략) 7월 21일 (중략) 이완용 등 7명이 대궐로 들어가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일에 대해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완용 등은 누누이 그 일을 아뢰었다. 이완용과 송병준은 공손하지 않은 말씨로 수없이 황제의 낯빛을 어둡게 했다. 이병무는 칼을 빼어들고 황제를 위협했다. 황제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허락했다. (후략)”

▶ 黑龍會 編, 『日韓合邦秘史』 上, 1930, 297~309쪽.

1907년 5월 22일 일제에 의해 박제순 내각이 물러나고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면서 법무 대신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7월 15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고종 황제 폐위 결정에 참여하고, 7월 18일 이완용의 집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그의 실행을 사전 준비하는 데 참여했으며, 오후 5시 고종을 알현하고 양위를 강요하였음.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

▶ 『순종실록』, 1907년 10월 25일.

“지시하기를, ‘지금 정사를 새롭게 하는 때에 있어서 내각의 대신들이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견지한 결과 공적이 현저히 나타났다. 총리대신 훈1등 이완용 대훈(大勳)으로 특별히 올려주고 이화 훈장(李花勳章)을 주며, 학부대신 훈1등 이재곤에게는 특별히 태극 훈장(太極勳章)을 수여하고, 탁지부 대신 훈2등 고영희, 군부대신 훈2등 이병무는 모두 훈1등으로 올려주며, 내부대신 임선준, 법무대신 조중응,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은 모두 훈1등을 주고 각각 태극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하였다.”

▶ 『공립신보』, 1907년 12월 6일, 「매국대신이 훈장 타—」.

“11월 1일 신내각 7적 대신이 모두 일등훈장을 땀으니 어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나라 팔아먹은 공로로 말하면 일본훈장은 가하되 한국훈패는 부당하다. 그 서훈된 것을 이에 기재하여 세상공론을 듣고자 하노라. 총리대신 이완용은 대훈위이화장, 학부대신 이재곤은 대훈위태극장, (중략) 법무대신 조중응은 훈일등태극장 (후략)”

▶ 『신한민보』, 1914년 6월 11일, 「의장 리석용 공판」.

“(전략) 재판장이 문기를 5역 7적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냐. 이씨 왈 너희도 알지 못할 리 없으나 내가 말하노라. 5역은 을사년 5조약을 체결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제순 다섯 역적을 가리킴이오. 7적은 정미년 7조약을 성립한 이완용, 이병무, 이재익[이재곤 - 작성자], 임선준, 조중응, 고영희, 송병준 7명을 지목함이오, 이 외에 특히 흉이 있으니 경술 합병 시에 재단한 이완용, 이용구 양흉이라. 합병은 아 대한황제폐하께서 부인하신 바요, 우리 2천만 민족이 부인한 이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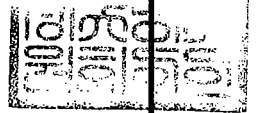
역, 7적, 2홍의 간계로 제출함이라.”

3) 경찰권 이양 각서 체결

▶ 釋尾春菴 著,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 540~541쪽.

“(전략) [한국통감부 총무장관 사무취급 - 작성자] 石塚英藏은 (중략) [1910년 - 작성자] 6월 22일 내각총리대신서리 박제순 및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비롯하여 각 대신을 그의 관저에 불러 (중략) 테라우치 통감의 제안을 보여주고 경찰위임에 대한利害를 상세히 설명하여 한국 내각의 승인을 구했다. (중략) 그 다음 날 내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탁지부대신 고영희 및 학부대신 이용식 兩相은 극력 반대하고 (중략) 이완용도 용이하게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한국 경찰의 실권이 이미 일본에 돌아간 오늘 (중략) 마침내 이에 응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한국 내각의 반대파도 절충하여 점차 그들을 설득하여 6월 24일 오후 8시로써 각서에 조인을 마쳤다.”

4) 한일합병조약 체결



▶ 朝鮮總督府, 『朝鮮ノ保護及併合』, 朝鮮總督府, 1918(龍溪書舍, 1995), 333쪽

“한국 황제폐하는 즉일[1910년 8월 22일 - 역자] 오후 1시를 기해 국무대신[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 작성자] 이하 흥왕 이재면, 증추원 의장 김윤식, 시종무관장 이병무, 민 궁상, 윤 시종원경 등을 불러 조칙을 이 총리에게 주었다. (중략) 이에 이 총리는 그 휴대한 바의 조약안을 황제에게 보이고 각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황제는 이를 嘉納 재가했고, 일동은 물러 나왔다. 이어서 이 총리 조 농상은 곧바로 통감을 그 관저로 방문했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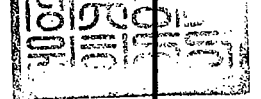
▶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26일, 「중요문데」.

“지난 22일에 일본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 한국에 관한 문제가 발표되었다 하며 일전에 이총리가 이번 중요문제에 대하여 내각의 의향을 보고함과 통감의 지휘를 준행하기로 하고 이총리 이하 박 내대와 고 탁대와 조 농대[조중응 - 작성자]가 일

제히 내각으로 들어가서 각의를 설행하고 어전에 상주하였는데 흥친왕된 이재면씨와 중추원 의장 김윤식과 궁내대신 민병석과 친위부 장관 리병무와 시종원경 윤덕영과 기타 각 대신들은 (중략) 반대하는 자가 없으므로 즉시 가결된 후에 (중략) 이 총리와 박 내부대신과 고 탁지부 대신과 이 학부대신은 그 안건을 결정한 후에 각기 자기의 집에서 문을 닫고 손을 보지 아니한다는데 (후략)”

▶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

“8월 16일 매국적 이완용이 통감부에 나가 사내[寺內正毅 - 작성자]의 충노 되기를 맹세하고 22일에 황제를 협박하여 형식상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모인 자는 총리 이완용, 황족대표 이재면, 궁내 민병석, 원로대표 김윤식, 내대 박제순, 시종경 윤덕영, 농대 조중응, 친위장관 이병무, 탁대 고영희 이상 9적이다. 이완용이 이에 사내의 요구하는 조건을 내어 놓으매 좌중이 묵묵불언하고 한 놈도 반대함이 없는 고로 완용은 이를 가결이라 하고 곧 황제를 협박하여 어압[御押 - 작성자]케 하고 당시 조중응을 데리고 마차를 몰아 통감에게 가져다 바치니 사내는 즉시 동경으로 전보하여 추밀원회의에 제출하였다더라.”



▶ 釋尾春菂 著,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 560쪽.

“[1910년 8월 - 작성자] 22일 오후 한국병합조약에 대한 한국의 어전회의가 열렸고, 이 어전회의에는 한국 내각의 모든 대신[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궁내대신 민병석, 시종원경 윤덕영 - 작성자]을 비롯하여 황족 수반인 이희 전하[이재면 - 작성자], 원로 대표자로서 중추원 의장 김윤식 및 시종무관장 이병무도 그 자리에 열석했고, 각신은 모두 일한병합조약 체결의 마지못한 형세를 말하고 (하략)”

2. <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자작 수작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자작 수작.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子爵 勳一等 趙重應”

▶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貴族의 敍爵」.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敍爵할 李王의 族戚 및 勳功이 有한 자는 既報와 如히 小原 宗秩寮主任 및 峰須賀 式部官이 昨夕에 그 調査件을 携帶入京하였으므로 금일 총독부에서 정식으로 敍爵할 터인데 그 恩與를 蒙할 者는 李王家族戚에 이지용, 이재곤, 이재극, 이재각, 박영효요, 원로 측에 민영휘, 민영소, 기타 閣臣에 이완용, 조중응, 박제순, 고영희, 이용직, 민병석, 중추원부의장 김윤식, 동 고문 이근택, 이근상, 이하영, 송병준, 임선준, 권중현, 조희연, 유길준, 윤덕영, 이병무, 이용구 등으로 爲首하여 총계 약 40명 내외간이라는데 概中 李王의 族戚 및 이완용은 백작이요, 김윤식은 자작이요, 기타는 總히 남작이라더라.”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者가 左와 如다더라. (중략) 子爵의 部 (중략) 趙重應 (후략)”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榮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御詔書를 所原 宗秩寮主事와 峰須賀 式部武官이 奉持하고 再昨夜에 入京하였는데 寺內 총독은 再昨日에 右聖旨에 對하여 授작의 光榮을 荷할 조선 元老大官 功勳者에게 각각 통보한 고로 昨日 (중략) 총독관저에서는 早朝부터 관저내의를 掃除하고 현관에 藤波 國分 양 통역관이 出迎하여 각각 응접실로 인도하는 상황은 頗히 多忙한데 전 총리대신 이완용과 전 농상공부대신 조중응과 전 내각서기관장 한창수 등 諸氏가 마차를 동승하고 오전 십시 오십분에 參着하고 (중략) 各自 輝韻하는 喜悅은 一場 可觀을 呈하였다더라.”

▶ 『매일신보』, 1910년 10월 9일, 「兩宮과 授爵者」.

“再昨日 총독부 수작식을 終한 후 이완용 조중응 양씨는 마차를 동승하고 창덕궁에 伺候하여 이왕전하께 수작영전을 蒙한 事에 就하여 수작자 일동의 대표로 左와 如히 言上하였다하는데 尋回 天황폐하께서 特사로 하여금 勅令에 대하여 수작의 恩命이 有한바 我등이 수작의 영전을 蒙함은 實로 의의 영광이라. (후략)”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勅命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석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에 參與한 자의 姓名은 左와 같더라. (중략) 훈1등 작작 조중응 (후략)”

▶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속음청사』 권14 경술[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100.4, 1929.

1919년 9월 20일 장남 趙大鎬(예비 보병 소위) 子爵 작위 습작.

3. <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역임

1910년 10월 1일부터 1917년 사망할 때까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을 역임하였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

朝鮮總督府中樞院副議長被仰付 (중략) 勳一等 趙重應 (후략)”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樞院敘任」.

“훈일등 김윤식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被仰付 (중략) 훈일등 (중략) 조중
웅 (중략) 諸氏는 全院 고문 被仰付 (후략)”

▶ 『매일신보』, 1910년 10월 11일, 「辭令書授與式」.

“寺內 총독은 昨日 오전 십시에 중추원 의장 고문 이하 찬의 부찬의를 該 관저에
소집하여 사령서수여식을 거행하였다는데 今 그 상황을 記하건대 고문 이완용 백
작으로 始하여 박제순 조중웅 이용직 임선준 등 각 자작과 기타 육십여명이 각각
마차 또는 인력거를 駟하여 정각 전에 총독부에 參集하였는데 총독은 십시 반에
일동에 대하여 본일 사령서 수여하는 旨를 간단히 설명하고 又 山縣 신임 의장을
일동에게 소개한 후에 山縣 의장은 취임한 禮辭를 述하고 정오에 退散하였다는데
김 부의장은 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고로 이완용 백작이 대리로 사령서를
더라.”

4.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대정실업친목회 발기 및 회장 역임

1916년 11월 대정실업친목회를 발기하고 회장이 되어 1919년 사망할 때까지 일제의
통치에 협력, 활동하였음.

▶ 『매일신보』, 1916년 11월 25일, 「大正親睦會의 發起에 對하여」(子爵 趙重應 談). “자작 조중응씨 기타 민간측 유지의 발기로 대정친목회라 칭하는 사교단체설립의 계획 중임은 별항과 如하거니와 右에 就하여 발기인 자작 조중응씨는 語하여 曰 我 京城은 朝鮮의 首府로 總督府所在地라. 然則 諸般事物이 可히 各地方에 模範이 될것이어늘 然而各地方을 顧見하면 文明新政이 實施以後로 各其居住하는 人士가 自覺奮發하는 精神으로 該地方에 對한 繁榮에 關한 者, 經濟에 關한 者, 勤儉貯蓄에 關한 者, 殖産興業에 關한 者, 滄俗漓風을 矯正에 關한 者, 納稅義務와 衛生勸行에 關한 者, 國家慶祝日에 關한 者와 禮式道德에 關한 者, 其他互相間親睦愛助에 關한 者 ▲ 內鮮人의 融和 團合에 關한 者 等 文明的 良風美俗이 漸次發達하는 模樣인데 試驗次로 京城을 顧見하면 吾人 側民間의 自力으로 所成한 바 凡事가 反히 地方만 不及함이 多有하니 此는 非他라. 各地方은 成聚한 部分이 狹小하고 事情이 單純한 故로 共關係가 親密한 結果에 共同協力하는 機會가 有하여 自然히 一致하는 機關이 有한 所以오. 京城은 此에 比하면 其部分이 稍廣하고 事情이 復雜한 故로 其關係가 疎遠하여 自然히 一致하는 機關이 無한 所以라. 此로 因하여 ▲ 每遇一事하면 議論이 百出하고 意志가 不通하여 或誤見誣傷도 其間에 易行하는 등 許多弊害가 俱生할뿐 아니라 又是 舊夢流習을 因하여 空想虛望의 依賴를 專事하고 吾人 等이 各其自覺奮發하는 實任과 情神이 不足하여 到今思之則此로 因하여 京城의 吾人側文明發達이 各地方에 居後하게 되었으니 京城人인 吾人이 어찌 概僕스 아니하리오. 此에 關하여 第一로 適切히 觸感한 者는 今年各防間의 自衛的 公德心防疫에 對하여 京城吾人側民間에 ▲ 一致한 衛生機關이 無하므로 彼此에 齟齬不便하던 事를 推測하여도 其他를 可知라. 從此에 京城中吾人側에서 可히 社會上에 有數한 人士와 相謀하여 今日昭代에 文明이 日新發達하는 辛運에 益加專力體遵하고 同心進就키 爲하여 吾人의 意志를 疏通하는 機關을 成하되 特히 大正親睦會라 稱하고 大正聖明時代의 一代 紀念을 作하여 良辰佳節과 其他機會에 人我相逢할 時는 蕩然한 談笑和樂之間에 一致한 同情으로 凡事를 圓滿히 發達케하면 吾人新進 ▲ 社會에 萬一之助가 될지며 更히 吾人 文明程度의 進歩함을 隨하여 漸次로 內鮮人士의 同化合成이 된 完全無缺한 一大社交機關을 作하게되면 國家에 對하여 忠良한 情神을 一貫하고 各道地方에 對하여 最善한 模範이 될줄로 思量하노라.”

▶ 『매일신보』, 1917년 2월 27일, 「大正親睦會 評議會」.

“대정친목회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조희장**[조중응 - 작성자] 저에 동회 이사평의원이 회집하여 좌의 사항에 취하여 관상 협의하였다더라. (후략)”

【참고사항①】 대정실업친목회(大正實業親睦會)에 대하여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207~209쪽.
약칭 ‘대정친목회’는 1916년 12월 29일 설립된 단체로 조중응이 중심이 되어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내선융화’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참고사항②】 기타 정치·사회단체 활동

1)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教育會) 회장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 「법대의 량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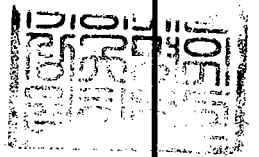
“법부대신 조중응씨는 동아개진교육회의 영수가 되어 한치유, 류병철 두 사람으로 우익을 삼아 성안에 일조화하는 자들을 도와 단체를 견고케하며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여 보부상과 다른 상민들에게 회표를 억력으로 팔고 월연금을 거두어 재정을 모은다하며 일면으로는 통감에게 자기도 큰 단체가 있다고 빙자하니 그 대신의 지위는 공고케 되리라고 여항간에 전설이 낭자하다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3일, 「보부상조직」.

“법대 조중응씨의 사업으로 동아개진교육회에서 상업을 확장한다하고 경상남도 각 군에 보부상을 조직할차로 누차 개최하였는데 각 군 경찰서에서 지금 주목하는 중이라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8일, 「논설」.

“(전략) 제2층노 조중응은 동아개진교육회의 두령이 되어 팔십 만명 보부상을 회잡하여 이등씨와 중미씨의 호령을 등재하며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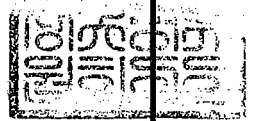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9일, 「조씨사면」.

“동아개진회 회장 조중응씨가 사면할 때에 진흥회사장 이규환씨가 피선되었다더라.”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172~176쪽.
동아개진교육회는 1905년 7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단체로 조중응은 1907년 11월과 1908년 4월 회장에 선임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는 의병 등 반일민족운동을 ‘무항심(無恒心)·무항육(無恒育)’한 ‘무뢰지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의병을 ‘비류(匪類)’·‘적류(賊類)’로 인식하였다. 특히 조중응은 일반 보부상들을 규합·조종하여 일진회와 경쟁적으로 통감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반의병 무장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대동학회(大東學會)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25~28쪽.
유림계를 획유하기 위해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친일 유교단체. 이완용·조중응이 伊藤博文에게서 2만원의 자금을 받아 장례원경(掌禮院卿)과 수학원장(修學院長)을 지낸 신기선(申箕善) 등을 내세워 유교와 신·구사상의 통합을 표방하면서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친일유교단체인 대동학회를 조직하였고, 대한매일신보는 ‘보호(保護)를 가무(歌舞)하고 결일(結日)을 역창(力倡)’했다고 지적하고, 회장 신기선을 당시 3대 매국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3) 동양협회경성지부(東洋協會京城支部)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28~29쪽.
일본 동양협회의 지부로서 조선에 대한 자선 구제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대만 위주의 동양협회 사업을 조선과 만주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서 조직되었는데, 조중응은 1908년 9월 13일 입회하였다.

4) 한일동지회(韓日同志會)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31~32쪽.
조선과 일본 양국 고위 인사들이 본격적인 조선 경영에 착수하기 위해 조직한 친목단체이다. 조중응은 조선측 인사로 참여하였으며, 조선과 일본 양국인의 친목을 도모하여 조선을 부식(扶植)할 목적으로 동경(東京)과 경성(京城)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양국의 동지자를 규합하여 조직한 것이었다.

5) 신사회(紳士會)의 발기인 위원과 평의원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37~41쪽
1907년 10월 16일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관리들이 조직한 행사단체. 신사회는 정부측의 공식행사와는 달리 독자적인 행사를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환영행사는 정부측 공식 행사일자와 같은 날인 10월 16일 별도로 열렸다. 조중응은 발기인 위원과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6) 일본관광단(日本觀光團)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46~49쪽.
제1차 일본관광단은 1909년 4월 각 사회단체 인사 93명으로 조직되어 일본의 근대화된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방일하였다가 1909년 5~6월경 귀국하였다. 조중응은 1909년 6월 3일 일본에서 관광단원 조명희를 만나 밀담을 나누고 귀국하여 일본관광단 단원들을 지방선유위원으로 각지에 파견하여 연설하게 하여 한일병합의 필연성을 선전하게 하였다. 제2차 일본관광단은 1909년 4월 경성일보사가 주최하여 조직한 것으로 조중응은 1910년 4월 21일 방일하였다가 5월 귀국하였다.

7)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52~56쪽.
일본의 조선 통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국시유세단은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벗어나 자존 자립할 능력이 없으며, 나아가 동양평화를 위해서도 보호 통치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시(國是)는 “한일 양국 교제에 기인하여 이해 공통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비는 조선통감부와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조중응은 1909년 8월 5일 발기인인 고희준에게 각 지방에 유세위원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종용하였고, 1910년 3월 18일 내각에 제의하여 경비 2,000여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8) 대한농회(大韓農會) 부회장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117쪽.
친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관련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적 규모의 농민 단체로 1909년 4월 현재 총재는 조희연이고 부회장은 조중응이었다.

9) 정우회(政友會)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98-102쪽.

1910년 3월 조중응이 이완용 등과 정우회(政友會)를 만들고 합병찬성을 추진하였으며, 조중응은 경비 담당이었음.

10) 시사신문사(時事新聞社)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186~187쪽.
1910년 1월 1일 창간된 시사신문은 이완용·조중응 등이 합병찬성을 추진하기 위해 고희준을 앞세워 조직한 친일언론으로 정우회(政友會)의 기관지였다.

11) 숭종회(崇宗會)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189쪽.
유교 진흥을 명목으로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이 설립한 친목단체로 조중응은 1909년 7월 8일 찬성하였다.

12) 공자교회(孔子教會)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193~194쪽.
공자교회는 대동학회(大東學會)를 개칭한 친일유립 단체로 대동학회를 공자교회로 재편할 때 伊藤博文이 25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조중응도 신문 발간에 경비를 보조하였다.

13) 삼십본산연합사무소(三十本山聯合事務所) 고문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553~555쪽.
일제의 협력과 지원 하에 조직된 불교계의 중심기관으로 조중응은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4)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 고문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555~556쪽.
이완용(李完用)·권중현(權重顯) 등의 주도로 설립된 불교계 친일단체로 전신은 불교진흥회였으며 조중응은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5) 서화연구회(書畫硏究會) 부회장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662~663쪽.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와 조선인 유력자들이 근대서화 연구를 표방하고 조직한 미술단체로 조중응은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6)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례단 대표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30일, 「농상대신발정」.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씨는 내각대표로 일본을 간다함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명제 명일간 발정하기로 한다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31일, 「특사금하사」.

“궁내대신 민병석 농상대신 조중응 양씨가 이등공 장례에 참례키 위하여 일본에 도왕하는데 재작일 상오 구시에 특사금 천환씩을 재상으로 하사하셨다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31일, 「제씨전송」.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씨가 발정함은 별항과 같거니와 총리대신이하 각부대신과 기타 황족과 원로제씨와 창덕궁 □□□□이 남대문 밖 정거장에 나가 전송하였다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일, 「부의사천환」.

“완순군 이재면과 영선군 이준용씨는 이등공 상사에 대하여 돈 사천환을 부의하였는데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씨가 가지고 갔다더라.”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9일 1면, 「돌아올 기약」.

“이등공 장례에 참례키 위하여 일본 갔던 조중응씨는 이삼일 후에 돌아올 터이오, 같이 간 일인 학강이는 다른 사무를 인하여 한두달 쯤 있다가 올 터이라더라.”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59~61쪽
대한제국 정부는 伊藤博文이 사망하자 1909년 10월 30일 조중응을 내각대표로 하는 한국황실정부대표이등박문조례단을 파견하였다.

17) 한성부민회 고문

- 출전: 『황성신문』, 1907년 10월 11일, 「奉迎節次」.

“황태자전하 渡韓時에 봉영 절차의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총리대신 이완용, 법무대신 조중응, 농상대신 송병준 삼씨는 고문으로 하고 其 儀節順序가 如左하니 (후략)”

- 출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34~37쪽.
약칭 ‘한성부민회’는 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에 맞춰 한성부를 보조하여 환영식과 절차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된 비상설단체로 조중응은 1907년 10월 11일 고문으로 선정되었다.

18)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장례에 참석

- 출전: 『매일신보』, 1910년 9월 27일, 30일.

前동감 曾禰荒助 장례에 前내각대표로 참석함.

5.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2면,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下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니 (중략) 동[자작 - 작성자] 조중응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일본 정부로부터 100,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2)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및 서위

▶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1907년 10월 26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旭日章을 받음.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4월 9일 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四十五年勅令第五十六號>에 의거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大正元年十二月七日 敍正四位 勳1等 子爵 趙重應”

▶ 일본내각, 『관보』, 1916년 12월 13일 부록.

1915년 11월 10일 <大正四年勅令第百五十四號>에 의거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음.

【참고사항】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출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4쪽.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직후인 1907년 8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2등 太極章을 받음.

1907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太極章을 받음.

1908년 3월 15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卽位禮式紀念 金章祗를 받음.

한일합병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8월 27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大勳李花大綬章을 받음.

1. 조중응은 1907년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 당하고 7월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로 이른바 차관정치가 실시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 당해 국권이 침해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법부대신으로서 고종 황제 퇴위와 순종황제로의 황제권 강제 양위 과정에 참여하고, 위 조약 체결에 찬동하였다. 그 결과 그는 '정미7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1910년 6월 22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통감부로 이양하는 각서 체결을 주도하고, 이어 한일합병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이완용과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로 인해 '9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탄받았다. 한일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조중응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조중응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받고 1919년 7월 25일 사망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작(受爵)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조중응은 1907년 10월 26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장을 받았다. 이는 그 해 7월에 있었던 고종 황제 퇴위, 한일신협약 체결, 군대 해산 등의 과정에서 대한제국 대신들이 일제에 협력했던 것에 대한 포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합병 이후인 1911년 2월 13일에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0만원의 은사공채를 받고, 1912년 8월 1일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7일 정4위에 서위되었다가 1916년 1월 20일 종3위에 서위되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1907년 8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조중응이 훈2등 태극장을 받고, 정2품 자헌대부에 가자되었으며 10월에 훈1등 태극장을 받은 것은 한일신협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그를 포함한 '정미7적'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행한 포

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1910년 8월 27일 조중응이 대훈이화대수장을 받은 것 역시 한일합병조약 체결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반대급부였다고 판단된다.

4. 조중응이 1910년 10월 1일부터 1919년 7월 25일 사망할 때까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고문으로 있었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조중응은 1916년부터는 내선융화를 목표로 결성된 대정실업친목회의 발기인과 회장을 역임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3호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조중응은 한일신협약, 경찰권 이양각서,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로 인해 1907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장을 받고, 한일합병이후 자작의 작위와 10만원의 은사공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정4위 및 종3위에 서위되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대정친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중응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6호, 7호, 9호, 13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